

[붙임3]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(신청기관명)

【안내사항】

- (작성대상) 최근 3년(2022. 10. 1. ~ 2025. 9. 30.)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

- (인정기준)

- ① 교육기관으로 의뢰받아 ‘기관 명의’로 교육한 실적(강사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개인 명의로 교육한 실적은 작성 제외)
- ②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(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의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- ③ 교육일정 및 대상이 다를 경우,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(예: A학교에서 3개 학급 대상으로 각각 교육한 경우, 강의 횟수는 3건으로 인정)

- (작성방법)

- ① 작성순서: **최근부터(2025년 9월)** 역순 기재
 ② 작성개수: **최대 300건**(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우수한 실적을 선별하여 기재)
 ③ 증빙번호: **제출하는 증빙자료* '파일명'과 동일하게** 작성:(강의실적1, 강의실적2, 강의실적...)
 * 내부결재 결과보고, 교육일지, 피교육기관 강의확인서 등 '장애인식개선교육' 실시 정보(일시, 대상, 참여인원, 교육내용, 강사명 등)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
 ※ '직인날인' 필수, 담당자 도장 및 서명은 인정 불가

- ④ 교육구분
-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: 우리 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올바른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직유관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특수법인), 각 급 학교(초,중,고,대학교), 어린이집, 유치원 소속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(장애인복지법 제25조)
 - 민간 장애인식개선교육: 민간의 일반 사업체 및 시설, 단체 등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외의 장애인식개선교육(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)

- ⑤ 교육인원: 교육을 이수한 실 참여자 수
- ⑥ 강사유형: 파견 강사의 유형 선택
- 전문강사: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자
 - 소속강사: 교육기관에 소속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(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시,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소속강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자만 '교육방법 및 활용(30점)' 만점에 해당하는 소속강사로 정식 인정됨.)
 - 전문·소속: 전문강사와 소속강사 함께 파견나간 경우 선택

[illegible]

